

검 토 보 고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3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해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감면혜택을 실질적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고,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함.(안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함.(안제2조 제3항)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시세중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구성된('96. 8. 2)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97. 12. 9)함에 따라,

동 계획중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까지 면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등록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로 인해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날로 늘어나는 중고자동차의 수출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이미 얻은 사항('98. 2. 12)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 대상을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조례상의 표기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제2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